

1. 개정이유

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·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환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중환자실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(제35조의2 제5호 신설)

- 1)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·운영 금지

3. 참고사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 제5호를 신설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5조의2 (의료기관의 운영기준) 5.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제34조(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)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의2(의료기관의 운영기준)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. 1. ~ 4. (생략) 5 < 신설 >	제35조의2(의료기관의 운영기준)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제34조(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)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